



[등록번호 20150522]
 [최초등록일 2015. 06. 19]
 [최종등록일 2025. 12. 22.]

이메일
 master@leeandk.co.kr
 홈페이지
 http://www.leegebap.co.kr

리깁밥

정 보 공 개 서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1차)〕

〔대표 전화번호 : 080-850-2211 대표 팩스번호 : 02-2179-7937〕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운영팀 080-850-221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리앤케이 인터내셔널	리김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1차)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5.17	2024.5.17	김석훈, 김미현	080-850-2211	02-2179-7937
	법인등록번호	110111-8949997	사업자등록번호	367-81-035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포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김미현	리김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1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석훈, 김미현	080-850-2211	02-2179-7937
관계	이름/상호	영업포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김석훈	리김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1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석훈, 김미현	080-850-2211	02-2179-7937
	김석훈/ (주)바인인터내셔널	두반담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타워 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석훈	02-3144-0840	031-905-3504
	김석훈/ (주)초에프앤비	초대창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타워 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석훈	031-903-7592	031-905-3504
관계	이름/상호	영업포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유나영	리김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1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석훈, 김미현	080-850-2211	02-2179-7937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리김밥] 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리김밥	
상 호	리김밥 00점	
상표(서비스표)	리김밥	상표등록 4016830680000(2021.01.15.)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상표권 없음
		상표권 없음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기의 표장(현)에 대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상표는 가맹본부의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3년 동안 다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포함)에 인수·합병 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바인인터 내셔널	리김밥	2024.05.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타워 I)	김석훈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1,059,213	955,564	103,648	455,838	31,745	32,148


*당사는 2024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1)-2 양도양수 이전의 법인의 재무사항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244,107	2,057,486	186,620	2,220,500	66,576	65,346
2023년	2,269,313	2,088,039	181,273	1,403,816	60,169	-5,347
2024년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미현	대표이사	2024.05 ~ 2024.07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기업총괄
		공동 대표이사	2024.07 ~ 현재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기업총괄
	김석훈	공동 대표이사	2024.07 ~ 현재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가맹사업 관리
			2020.01 ~ 현재	(주)초에프앤비 대표이사	기업총괄
			2015.03 ~ 현재	(주)바인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기업총괄
	유나영	감사	2024.05 ~ 현재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감사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년 5월 25일
(직영점 시작일 : 2012년 02월 13일)

2. [리김밥]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리즈푸드	압구정 리김밥	이은림	2012.02 ~ 2016.05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12, 1층(신사동, 서원빌딩)
(주)바인인터내셔널	리김밥	김석훈	2016.05 ~ 2024.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타워 I)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리김밥	김석훈, 김미현	2024.07 ~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222호(백석동, 동문타워1차)

3. [리김밥]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리김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김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2	40	2	33	31	2	29	28	1
서울	27	25	2	22	20	2	21	20	
부산	1	1		1	1		1	1	
대구									
인천	1	1		1	1		1	1	
광주				1	1				
대전									
울산									
세종	1	1							

경기	10	10		7	7		6	5	1
강원									
충북									
충남	1	1		1	1		1	1	
전북									
전남									
경북	1	1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35	6	0	1	3	40
2023	40	2	4	7	2	31
2024	31	0	0	3	0	28

6. [리김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 당사는 [리김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당브랜드)	(주)리엔케이 인터내셔널	리김밥	20150522	분식	40/2	31/2	28/1
가맹본부	(주)바인인터 내셔널	두반담	20190681	한식	-	-	0/0
계열사	(주)초에프앤 비	초대창	20200478	기타외식	4/0	8/0	7/0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리김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8	352,134	28,426	2,013,968	111,887	15,152	1,456	28개 산정
서울	20	360,873	29,679	2,013,968	111,887	15,152	1,562	20개 산정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5	333,033	24,753	655,222	36,401	19,732	1,456	5개 산정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리깁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리깁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8개	1,61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점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 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30	 (비공개)	-	
광고		(비공개)	330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당사는 아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기관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리앤케이인터내셔널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 개월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리깅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0평형)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7,7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영업포지 사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3인기준
오픈준비물	2,200	계약 체결과 동시			
총계	13,200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5평형)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7,7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에 가	계약기간 내에 가맹	영업포지 사용료

			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3인기준
오픈준비물	2,640	계약 체결과 동시	발주 전 계약취소	발주 이후 반환되지 않음	
총계	13,640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 노하우제공,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 기타 개업지원 대가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한시적 면제	계약 체결 동기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합 계	13,640
가맹비	7,700
교육비	3,300
오픈준비물	2,640
계약이행보증금	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

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6,650				33.㎡기준 (10평)
기본 인테리어 (점포공사)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20,900	2,090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 (기본 파사드)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6,600		계약시:40%	발주 전 계약취소	돌출간판/가림막포함 (현장상황따라 변동가능/파사드별도)
주방시설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15,400	1,540	착공후 7일 이내 :30%	발주 전 계약취소	서랍냉장고, 튀김기포함
기물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4,400	440		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3,300		장비입고 5일전 30%	발주 전 계약취소	2인1조*10조 설치 후 정산
가구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1,100			발주 전 계약취소	
POS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1,650			발주 전 계약취소	
초도물류	협력업체	3,300		발주 시	오픈 전 계약취소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4,085				49.5.㎡기준 (15평)
기본 인테리어 (점포공사)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31,350	2,090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	가맹본부 또는	7,700		계약시:40%	발주 전	돌출간판/가림막포

(기본 파사드)	지정업체(미정)				계약취소	합 (현장상황따라 변동가능/파사드별 도)
주방시설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18,645	1,243	착공후 7일이내 :30%	발주 전 계약취소	서랍냉장고, 튀김기포함
기물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5,390	약359		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4,950		장비입고 5일전 30%	발주 전 계약취소	2인1조*15조 설치 후 정산
가구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1,100			발주 전 계약취소	
POS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미정)	1,650			발주 전 계약취소	
초도물류	협력업체	3,300		발주 시	오픈 전 계약취소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당사의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감독 및 검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가로 3.3㎡ 당 330천원(부가세포함)과 공사에 필요한 도면 등의 제공 대가로 1,650천원(부가세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의 도면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소방관련 인허가비, 실외공사, 전면·입구창호공사, 철거, 공조냉난방공사, 폴딩도어, 전기승압공사, 의자 및 탁자, TV, 음향장치 등) 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 별도 기기 : 김밥 커팅기, 김밥시트기, CCTV/음향, 음료 쇼케이스, 진동벨, 인덕션 등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의 입지 선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최종 결정은 가맹점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할 경우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리깅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가맹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이 정보공개서 [V.9] 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순매출액 X 1%	다음 월 10일	후불로 반환없음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대가

						후불로 반환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년 220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 연[15]%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해충방제	지정업체 (미정)	사용에 따라	미정			
영상 DID 음원사용료	지정업체 (미정)	사용에 따라	미정			
POS 사용료	지정업체 (미정)	사용에 따라 지급	다음 월 5일			

※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직전년도에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문의: 운영팀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문의: 운영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운영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계약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깁법]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				
가입비	-				갱신청구권은 양도인의 잔여기간
교육비	3,300	양수계약시 지급	교육개시전 계약해지	교육 개시	
보증금	한시적 면제	양수계약시 지급	계약종료시 반환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부가세 없음

*단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 경우 신규계약과 동일한 절차 및 금액으로 계약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 정보공개서 [V.7] 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비품·집기 등을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은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

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철거·제거 및 반환 등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제거 및 반환 등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제거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귀하가 [리김밥] 가맹점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리김밥]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리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024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리김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다음의 지정된 상품류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No.	제품명	권장가격
김밥	1	야채김밥	
	2	리김밥	
	3	무말랭이김밥	
	4	달콤유부우영김밥	
	5	크레이와사마요김밥	
	6	참치김밥	
	7	명란마요계란김밥	
	8	매콤견과류김밥	
	9	매콤제육김밥	
	10	버섯불고기김밥	
	11	에그돈가츠김밥	
	12	에그취림프김밥	
면	1	라면	
	2	치즈라면	
	3	어묵우동	
	4	채소발쫄면	
	5	슬러시소마	
분식	1	국물떡볶이	
	2	로제떡볶이	
	3	눈꽃치즈떡볶이	
	4	라볶이	
	5	어묵탕	
식사	1	버섯물만두국	

	2	치즈김치볶음밥	
	3	몽글오프라이스	
	4	제육덮밥	
	5	소불고기덮밥	
	6	바삭 통 등심돈까스	
	7	로제 통 등심돈까스	
	8	일본식 카레라이스	
	토평	1	체다치즈
2		눈꽃치즈	
3		에담치즈	
4		고다치즈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구두경고, 2회 위반시 서면시정요구, 3회 위반시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 메뉴의 주재료는 가맹본부에서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고 소스 등 부재료 또한 가맹본부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시 표준화된 조리법을 사용,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 리스트]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위반: 구두 경고 2회위반: 2회이상 서면 시정 요구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No.	제품명	권장가격	가격통보방법
김밥	1	야채김밥	계약시 고지	유선 또는 pos

	2	리김밥		
	3	무말랭이김밥		
	4	달콤유부우영김밥		
	5	크레이와사마요김밥		
	6	참치김밥		
	7	명란마요계란김밥		
	8	매콤견과류김밥		
	9	매콤제육김밥		
	10	버섯불고기김밥		
	11	에그돈가츠김밥		
	12	에그쉬림프김밥		
	면	1	라면	
2		치즈라면		
3		어묵우동		
4		채소발쫄면		
5		슬리시소바		
분식	1	국물떡볶이		
	2	로제떡볶이		
	3	눈꽃치즈떡볶이		
	4	라볶이		
	5	어묵탕		
식사	1	버섯물만두국		
	2	치즈김치볶음밥		
	3	몽글오므라이스		
	4	제육덮밥		
	5	소불고기덮밥		
	6	바삭 통 등심돈까스		
	7	로제 통 등심돈까스		
	8	일본식 카레라이스		
토핑	1	체다치즈		
	2	눈꽃치즈		
	3	에담치즈		
	4	고다치즈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식업	리김밥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은 별도 규정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

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리깅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나 공급하지 않는 물품을 가맹사업과는 별도의 다른 유통경로(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CVS,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를 통해 판매 내지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99%	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리깅법] 가맹점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8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일반적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3회)이상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39조
○ 가맹점사업자가 (2회)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 위치변경을 한 경우	
○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조리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p>○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p>
<p>○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p>
<p>○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p>
<p>○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p>

영업중단 사유

<p>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및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거나 급박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영업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 불량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맹본부나 타 가맹점사업자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고객과의 분쟁 또는 형사고소·고발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맹본부나 타 가맹점사업자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p>② 가맹점사업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가맹본부가 부득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영업중단의 조치를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사회적 여론과 사안의 해결 또는 위기의 극복 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악의없이 가맹사업의 명성 유지 및 위기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p>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수정사유	재조정절차	동의절차
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에 대한 고시 등이 있는 경우 ③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능조건	양도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운영권의 대리나 위탁운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	이전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승인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소요) ->승인여부 통지 ->가맹본부의 상속에 의한 사업자변경계약 체결 ->가맹점 운영권 상속완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대리행사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업무위탁	불가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리김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금지지역	경업허가절차	비고
김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식업종	전국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리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09:00 ~ 오후 09:00 ※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12시간 이상)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영업일 준수 ※ 단, 가맹점사업자는 1월을 기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7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매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3)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습니다.	문의: 운영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3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단, 가맹점사업자는 1월을 기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7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매장에 상주 ※ 기준 : 49.5㎡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운영팀	통상 QSC 관리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 또는 POS점검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리김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부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전체광고	전체광고	광고계획 공고 → 가맹점	대중매체광고,

전체행사	(브랜드광고 포함)	비용의 50%	비용의 50%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광고부담금 납부(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 → 광고개시	지역언론매체 등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전체광고 비용의 75%	전체광고 비용의 25%		
	가맹점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가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전 서면승인
상품권, 포인트카드, 신용카드 제휴 등	전체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부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동의→ 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부담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시행계획을 통지하는 날 직전 3월간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p>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p>: 제17조 1항의 월 평균로열티 × 10개월(단, 10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p> <p>② 아래 내용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과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 위반, 계약종료 시 고객정보 등 업무이관 불이행 시 금 오백만원(₩5,000,000) 위약금 지급 2.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무단 사용 시 위반일수 × 금 십만원(₩100,000) 위약금 지급 3. 가맹점사업자가 미허가된 타사 제품사용 등 상품품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금 오백만원(₩5,000,000) 위약금 지급 <p>③ 기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의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p>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6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필요 시 실시)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선택사항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증보험	- 계약 체결 -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증 보험 증서제공	D-40	IV.1 참고
간판 인테리어 공사 본사교육 시작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 실시 - 본사교육 시작	D-40~15(25일)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자율 실시 IV.1 참고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 - 인테리어 공사와 동시 진행	D-15~10(5일)	IV.1 참고
현장점검 본사교육 종료	- 점포설비, 집기, 인테리어 점검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2(5일)	본사교육 5일 (1일 7시간) VIII.2 참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제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알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리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오리엔테이션, 조리 이론 및 실기교육, 점포운영, 기기사용법, 발주및 입금 방법, 세무교육 등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교육	신상품, 서비스 강화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리김밥]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 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1일 7시간)	3,300 (3인기준)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년 2일	년 220 (1회 11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신규 교육은 리김밥 아카데미 5일 과정이 원칙이나 필요시 교육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수시교육은 신제품 개발 등 가맹본부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교육비용은 가맹본부가 무상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 통지하며 교통비, 숙박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에 따라 협의 후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수료하여야 하며,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음식의 조리 및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다산직영점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32 172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개월	2024.11.1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0,831 (12개월 환산 매출액 304,98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해당 매출액을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의 매출액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수령인 :

(인) 또는 서명

<별첨2> 설비, 주방집기 및 원부재료 목록

필수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급상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4>

영업지역 표시도

아래의 지도 표기와 같이 영업지역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상기와 같이 설정합니다.

본인 성명 _____ (인)

<별첨5>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를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석훈, 김미현 (인)

----- 간인 후 절취 -----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포함)를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장소		제공일	년 월 일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가맹희망자 성명: (인)
 가맹본부: (주)리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석훈, 김미현 (인)